

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(지방국토관리청 보관용)				
관리번호				
성명 (법인의 명칭)				
주소				
평가대상 토지	소재지		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(m <sup>2</sup> )	
납부고지금액	금		원	
납부기한	년		월	일
<p>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국토관리청장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</p>				
※ 첨부서류: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				

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 
(납부자 보관용)

관리번호				
성명 (법인의 명칭)				
주소				
평가대상 토지	소재지		필지의 수 및 전체 면적(m <sup>2</sup> )	
납부고지금액	금 원			
납부기한	년 월 일			
<p>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국토관리청장 <span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">직인</span></p>				
※ 첨부서류: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				
※ 위 고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				